

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(제1조의4제1항 관련)

1. 제1조의4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가.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

- 1)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(價額)이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목적의 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,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마다 미화 6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(加算)한다.
- 2)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「공증인법」 제7조를 준용한다.
- 3)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)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. 다만, 그 최저가액이 미화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.

- 나. 다음 사항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1)에서 정한 수수료의 반액(半額)으로 한다.

- 1) 승인·허가 또는 동의
- 2) 양쪽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
- 3) 유언의 전부 또는 부분적 취소
- 4)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

다.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

- 1)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 및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미화 8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2)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 사실에 관하여 산정(算定)한다.

- 라. 위임장·수취서 또는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- 마. 인증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각종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.
 - 바. 「상법」에 따른 정관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2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- 사.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1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- 아.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- 자.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장당 미화 4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- 차.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확인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미화 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2.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중 그 사항에 가장 비슷한 사항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3. 촉탁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촉탁인 및 참석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증사무를 중단하였거나 완결하지 못한 경우 그 수수료는 미화 2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4.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